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해설

- ① | × |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② | × | 미군정기에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 ③ | ×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 ④ | ○ |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④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 ① | ○ |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 ② | ○ |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법원조직법 제60조)
- ③ | ○ | (헌법 제84조)
- ④ | × | '**지역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한 쉬테판 뢰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 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 ③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 ④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해설

- ① | ○ | <기본서 91p>
- ② | ×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제국경찰법x) **일반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 ③ | ○ |
- ④ | ○ |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위협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협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외관적 위협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협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 ④ 위협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협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해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①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위험 존재의 불확실성을 경찰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험혐의는 위협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협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③ 경찰의 개입은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협조사 차원에서의 개입과 같은 예비적인 조치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예 방송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기본서 14p>

▣ 위협의 분류(경찰관의 인식에 따른 구분)

외관적 위협	①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례 깊게 판단하여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협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② 경찰작용의 적법성 판단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예측과 관련해 경찰관의 시점 즉 사전적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관사의 사후적 시점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국가의 손실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협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
위험혐의	①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위험 존재의 불확실성을 경찰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험혐의는 위협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협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③ 경찰의 개입은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협조사 차원에서의 개입과 같은 예비적인 조치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방송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오상위험 (추정적 위협)	① 오상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이 경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영화 촬영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격투신 장면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관의 개입.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③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전체사회가설은 신입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해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구조원인가설은 신입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경찰부패의 원인 (텔라트르의 정리)

썩은 사과 가설 (개인적 결함)	①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듯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 된다는 이론. ②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부패가 나타난다고 보아 모집단계에서 부패가능자의 배제를 중시 한다. ③ 경찰부패의 원인을 조직체계보다는 '이미 형성된 개인의 성격'에서 찾음
구조원인 가설 (경찰조직)	① 신입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선임경찰로부터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에 들어선다는 이론. ② 로버, 니터호퍼, 바커 가 대표 학자이다. ③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 침묵의 규범 '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입형사가 동료경찰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동료경찰과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동료경찰이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는 경우 ④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혼자 출장을 가면서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시간외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전체사회 가설 (시민사회)	① 시민사회의 부패와 경찰부패에 대한 목인·조장이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 이다. ② 윌슨 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하게 했다.'고 주장 ③ 시민들의 호의에 길들여져 부패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과 유사하다.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새로 발령받은 신입경찰관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해설

- ① |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①)
- ② | ×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① 제7호)
- ③ | ○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① 제3호)
- ④ |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4호)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 ①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②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①②)
- ③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③)
- ④ | × |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④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해설

① | ○ |

② | ×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예정[시행일: 2022. 7. 5.]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 ○ |

④ | ○ |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2호)
- ② | × |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③ | ○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①)
- ④ | ○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2. 인권교육 추진 현황 3.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

10.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와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변상명령: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경고·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 시정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 | × | 현지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 ㉡ | ○ |
- ㉢ | × | 개선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 ㉣ | × | 권고에 대한 설명이다.

▣ 감사결과와 처리기준 등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1호)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시정요구 (제2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제3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 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 가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 (제4호)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 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제5호)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 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 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제6호)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제7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제8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제9조)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④ 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해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스페로우(Sparrow)의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의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에 대한 답변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12.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 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① 낙인이론 ② 일반긴장이론 ③ 깨진 유리창 이론 ④ 일상활동이론

해설

① | ○ |

② | × | 애그뉴(Robert Agnew)가 주장한 긴장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은 과거 Merton이 제시했던 긴장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Merton의 이론과 달리 계층과 상관없는 긴장의 개인적,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하류계층의 범죄 행위가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목적달성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제거와 부정적 자극의 출현 등이 긴장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긴장의 원인들은 **노여움이나 좌절, 실망,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상황(negative affective states)'을 야기**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상황은 약물남용이나 일탈, 폭력, 학교 중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신현기, 2012: 328).

③ | × | 윌슨과 켈링의 이론으로 ① 사소한 무질서행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 ②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무관용 정책을 사용. ☞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② 시민들에게는 파괴되거나 더럽혀진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여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무질서의 예방노력을 중요시함. [예]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실천을 통해 범죄예방 성과를 달성.

④ | × | 코헨과 펠슨의 이론으로 ① **사회구성원의 일상행위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②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여 여성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증가하여 그만큼 범죄 발생도 증가함 ③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과 범죄기회를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1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보기 2>

- ㉠ 영역성 ㉡ 자연적 감시 ㉢ 이미지 ㉣ 환경

(가) (나) (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뉴먼(O. Newman)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구성요소 <정진천 경찰학 기출총정리 80p>

영역성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 예)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된다.
자연적 감시	실내와 실외의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예) 특별한 장비 없이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이미지	이웃지역의 외관 예) 지역 외관의 비고립성 및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보여 주는 것
환경 (안전지대)	이웃지역의 주위환경 예) 범죄가 적은 지역에 주택, 건물, 지역사회가 위치하는 것.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 ②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 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할거주의'는 **소속기관·부서에만 충성·집착** 함으로써 타 조직·부서와의 조정·협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 관료제의 역기능 (머턴 : Robert K. Merton)

목표의 전환 (동조과잉)	행정의 본래 목표가 도외시되고 수단(규칙·절차)에 집착 할 수 있다.
할거주의	소속기관·부서에만 충성·집착 함으로써 타 조직·부서와의 조정·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 (red-tape)	관료제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른 서면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비능률 현상
변화에 대한 저항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신지식을 거부하고 보수주의화 될 수 있다.
전문가적 무능	지나친 분업으로 인한 병리현상으로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의 편협한 시각이 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와 소극적 일처리 및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을 할 수 있다.
인간성의 상실	지나친 물인정성, 과도한 공·사 구별로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다.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 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 임용될 수 없다.
-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 ① |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 ②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금, 공)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① 제2호)
- ③ | ×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③)
- ④ | ○ |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①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16.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 | (경찰공무원법 제28조① 제4호)
- ㉡ | × | (경찰공무원법 제28조① 제3호)
- ㉢ | × | (경찰공무원법 제28조① 제2호)
- ㉣ | ○ | (경찰공무원법 제28조① 제1호)

▣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 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②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③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③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파장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⑤)
- ② | × |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⑦)
- ③ | ○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④)
- ④ | ○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③)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①)
- ② | ○ | (국가재정법 제28조)
- ③ | ○ | (국가재정법 제43조)
- ④ | ○ | (국가재정법 제33조)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I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 |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2호)
- ② | ×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①)
- ③ | ○ | (보안업무규정 제27조)
- ④ | ○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시 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 ㉢ 직주일제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 ㉤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해설

- ㉠ |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①)
- ㉡ |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②)
- ㉢ | × | 직주일제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①)
- ㉣ |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③ 제3호)
- ㉤ |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① 제2호)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설

- ① |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가)
- ② | ○ | (경비업법 제2조 나)
- ③ |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재산x)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2조 다)
- ④ | ○ | (경비업법 제2조 라)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① 제1호)
- ② |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①)
- ③ |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②)
- ④ |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②)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톱킹 행위의 제지,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 ①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② | ×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③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 ④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②)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협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 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설

- ① | × |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
- ②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
- ③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 ④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8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엇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 ① | ○ | (대법원 2004도1109).
- ② | ○ | (대법원 99도5210)
- ③ | ×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도1228).
- ④ | ○ | (대법원 2002도4220)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 ① | ○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
- ② | ○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2호)
- ③ | ×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5호)
- ④ | ○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4호)

▣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 에서 재판 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 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설

- ① | ×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무) 및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준용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 ※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
- ②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 ③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④)
- ④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②)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서'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② '공고문서'란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④ '법규문서'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해설

- ① |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 ② |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 ③ | × | 민원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호)
- ④ |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

22년 1차 경찰학 해설 에듀윌 정진천 경찰학

▣ 공문서의 종류 (제4조) <기본서 279p>

법규문서 (제1호)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지시문서 (제2호)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 (제3호)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비치문서 (제4호)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 (제5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해설

- ① | ×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 ② | ×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 ③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 ④ |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해설

- ① | ○ | (행정절차법 제48조①)
- ② | ○ | (행정절차법 제48조②)
- ③ | ○ | (행정절차법 제49조②)
- ④ | ×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 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③)
- ②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③ | ×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④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 | 행정상 즉시강제. <기본서 221, 223p>
- ㉡ | ○ | 행정상 즉시강제.
- ㉢ | × | 행정상 강제집행.
- ㉣ | × | 행정상 강제집행.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총 소총 기관총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 ① | × |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② |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①)
- ③ |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②)
- ④ |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설

- ① | ○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①)
- ②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②)
- ③ | ×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③)
- ④ | ○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⑥)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해설

- ① | ○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2)
- ② | ○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3.)
- ③ | ○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4.)
- ④ | × | **폭력적 공격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4.) ➡ 치명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하고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5)

22년 1차 경찰학 해설 에듀윌 정진천 경찰학

▣ 대상자의 행위 및 물리력 사용정도

2.1. 대상자 행위		2.2. 경찰관 대응 수준	
2.1.1. 순응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2.2.1. 협조적 통제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입장 나. 언어적 통제 다.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라. 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2.1.2. 소극적 저항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예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꼭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2. 접촉 통제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체 일부 잡기·밀기·잡아끌기, 쥐기·누르기·비틀기 나.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2.1.3. 적극적 저항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3. 저위험 물리력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나. 분사기 사용(다른 저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경찰관이나 대상자의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1.4. 폭력적 공격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4. 중위험 물리력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다.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계 미는 행위 라. 전자충격기 사용
2.1.5. 치명적 공격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계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5. 고위험 물리력	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나.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고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권총 등 총기류 사용 2)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 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해설

- ① | × | 비례의 원칙 ➡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 ② | × | 평등의 원칙 ➡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 · 신앙 · 인종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 ③ | ○ |
- ④ | ×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 기관이 행정 활동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 ①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①)
- ② | ×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4)
- ③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⑤)
- ④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③)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운전면허
-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 ③ 한의사 면허
-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해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해설

- ① | × | 민중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 |
- ③ | ○ |
- ④ | ○ |

▣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 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 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공무원 지위확인소송, 공무원 봉급, 연금지급청구소송 등
	3. 민 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구민의 선거무효소송 등
	4. 기 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지방법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 (제4조)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 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 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 작위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❶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❷ 집회 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 통제에서 인권존중 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 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 ❸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❹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해설

- ① | × | 일선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 ② | ○ | <기본서 555p>
- ③ | ○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2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긴급신고대응, 사이버 수사기법 등 한국 경찰의 치안기법을 베트남, 우즈베크, 앙골라 등 8개국 경찰관 277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수했다.
- ※ 대상국(8):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크, 투르크메, 엘살바도르, 앙골라
사업분야(4): 긴급신고대응, 사이버수사, 현장감식, 시시티브이(CCTV) 수사
- ④ | ○ |